

의안번호	제 141 호
의 결 년 월 일	1997. 2. 28. (제 60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7. / . 24.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7. 1. 24.

의 안	141
번 호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일원화하고
- 관리인 지정관계를 보완하고, 군수의 권한중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하고(안 제1조)
- 시장관리인 지정관계를 보완하며 (안 제4조)
-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별표1")을 일원화 하고 (안 제15조)
- 군수의 권한중 일부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함 (안 제21조)

☐ 근거법령

-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 내 용

-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참고자료 : 없음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정기시장의 설치 및 사용"을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운영·관리"로 한다.

제2조중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게 할 경우 선정방법과 관리인이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 경쟁계약으로 한다.
2.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으로 한다.
3.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또는 일시불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법 제16조 제1항"으로, 제2항 제1호 "법 제13조 규정"을 "법 제16조 규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상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한 때
3. 정기시장의 입주자로 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별표1"을 붙임 "별표"로하고, 제2항중 "사용평수"를 "사용면적"으로 하며, 제3항4호중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 마다"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권한 위임)군수는 이조례에 의한 권한 일부를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부 칙

-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받은 정기시장, 계절시장과 시장관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소매업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충청북 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u>설치 및 사용에</u>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도·소매업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u>개설 및 시설기준, 운</u> <u>영·관리에</u>		
제2조(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제4조(관리운영)①-②(생략) (신설)		제4조(관리운영)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게 할 경우 선정방법과 관리인이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 경쟁 계약으로 한다. 2.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으로 한 다. 3.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또는 일시불 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①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군수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2. (생략) 3. (생략)	제6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①법 제16조 제1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 제1항..... 1. 법 제16조 규정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조(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7조(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의 지정을 받은 때 2.정기시장의 관리 운영상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한 때 3.정기시장의 입주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료 징수)① 군수,정기시장관리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 에 의거 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① 군수,정기시장관리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 에 의거 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①		
② 시장의 상가 및 점포와 장옥이나 노점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② 시장의 상가 및 점포와 장옥이나 노점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②		 "별표"
1. (생략)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시장개장일시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방미터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본다.	4.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시장개장일시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방미터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본다.	4.		
	(신 설)			
제21조(규칙)(생략)	제21조(권한 위임)군수는 이조례에 의한 권한 일부를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위임)군수는 이조례에 의한 권한 일부를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규칙)(현행 제21조와 같음)		

[별표 1]

정기시장 사용 요율 기준표

현		행		
구 분	사용별	점포종류	기 준	사 용 료
1. 공설시장 (읍)	· 상 시	상가및점포	㎡당	·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장 옥	㎡당	·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노 점	㎡당	· 토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 수 시 (어류 소채류)	화물자동차 2 톤 이상	1회 1대당	500 원
		화물자동차 2 톤 미만	1회 1대당	400 원
		우 마 차	1회 1대당	150 원
		리 아 카	1회 1대당	50 원
		경 운 기	1회 1대당	150 원
		집군·기타	1회 1반입 단위 마다	30 원
2. 정기시장 (면·리)	· 상 시	장 옥	1일 1㎡당	100 원
		노 점	1일 1㎡당	50 원
		기타노점의 사 용	1일 1㎡당	50 원
	· 수 시	장 옥	1일 1㎡당	150 원
		노 점	1일 1㎡당	100 원
		기타노점의 사 용	1일 1㎡당	100 원

[별표]

정기시장 사용 요율 기준표

개		정 (안)
종 별	기 준	사 용 료
점 포	㎡ 당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장 옥	㎡ 당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노 점	㎡ 당	100원
화물자동차 2 톤 이상	1회 1대당	500원
화물자동차 2 톤 미만	1회 1대당	400원
리 아 카	1회 1대당	50원
경 운 기	1회 1대당	150원
집군·기타	1회 1반입 단위 마다	30원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정 (1988. 12. 8 조례 제1126호)

개정 (1989. 4. 17 조례 제1183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대지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수거장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조【정기시장의 개설】 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1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시설

제 4 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책 무】 ①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그 관리인은 입주상인의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명랑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 훈련의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의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 관리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제 7 조【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상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정기시장의 입주자로 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때

제 8 조【사용허가】① 정기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사용개소, 사용종류, 건물규모, 면적, 시가표준액

3. 특별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내용

4. 사용시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를 맡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주소변경은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정기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안에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 조【사용자의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 11 조【사용권의 양도금지】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손해배상 등】군수는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 13 조【허가의 취소 등】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군수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보험가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5 조【사용료 징수】① 군수, 정기시장관리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시장의 상가 및 점포와 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거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

제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는 16일 미만일 때에는 당월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제1호의 단서의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3. 한개의 점포가 둘이상의 과세산출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시장개장일시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방미터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본다.

제 16 조【사용료의 납기】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노점에 한하여는 시장 위탁관리인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시장은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할 때에는 시장 사용전에 수시 납부한다.

제 17 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경감은 "별표1"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 18 조【사용료의 환급】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속하는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 19 조【가산금과 증가산금】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 경과한 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가산 징수한다.

제 20 조【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21 조【규 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 12. 8 조례 제11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조례 제1028호 1987. 10. 10)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보은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받은 정기시장,계절시장과 시장관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4. 17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